

- 노인여가시설인 노인복지회관의 신축에 따라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
- 동 조례의 제명이 “고성군원로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”라고 하였는바 기존의 법적용어인 “노인복지회관”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이 제정되는 “원로복지관”으로 규정한 제명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,
- 또한 전반적인 내용, 체계, 형식 및 자구 등에도 입법형식상의 제 기준에 적합하게 입안되었는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안 제8조의 운영관리를 사회복지 법인 또는 노인단체에 위탁 관리 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는 어느 정도 보조해 주어야 되는지
- 답 : 아직 세부적으로 계획된바 없으며, 전국 지자체 및 여타 시군의 선택을 조사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규칙제정 시에 참고토록 할 것임.

6. 토 론

- 수정동의 : 동 조례의 제명 중 원로복지관이란 내용은 사전적 표준용어가 아니며, 일반 서민층 노인들에 대한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제명과 안 제1조, 안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원로복지관을 법적 용어인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자는 수정안 동의요청
- ※ 불임 : 고성군원로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

7. 심사결과

- 2001. 12. 11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대로 가결

의안번호	제 호
의결년월일	2001. 12. . (제 92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고성군원로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제안자	총무위원회위원장
제안년월일	2001. 12. .

고성군원로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년월일 : 2001. 12. .

제안자 : 총무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사유

- 조례의 제명 중 원로복지관 이란 내용이 사전적 표준용어가 아니며, 일반 서민층 노인들에 대한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제명과 안 제1조, 안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원로복지관을 법적 용어인 노인복지관으로 수정코자함.

2. 주요골자

- 고성군원로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고성군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안으로 변경(제명)
- 원로복지관을 노인복지관으로 변경
(안 제1조, 안 제2조제1항, 별지 제1호)

- ## 3. 붙임 : 1. 수정안 본문 2. 수정안대비표

고성군원로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

고성군원로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명 중 “원로복지관”을 “노인복지관”으로 변경한다.

안 제1조(목적) 중 “원로복지관”을 “노인복지관”으로 변경한다.

안 제2조(명칭 및 위치)제1항 중 “원로복지관”을 “노인복지관”으로 변경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중 “원로복지관”을 “노인복지관”으로 변경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